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 전문가 패널 검토 보고서

전문가 패널: 이성보 변호사, 이용진 교수, 김동수 교수

2017-05-31

<목차>

1	머리말	2
2	주요 진행경과.....	2
3	배상 방안에 대한 검토.....	3
	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의 소통	3
	나. 배상규정에 관한 검토	4
	(1) 위자료.....	5
	(2) 과거 치료비 및 간병비 배상.....	7
	(3) 일실수입의 배상.....	8
	(4) 상해피해자들에 대한 평생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9
	(5) 배상규정의 공정한 적용.....	11
	다. 배상 방안의 절차에 대한 검토	12
	(1) 배상 방안 진행 현황.....	12
	(2) 신속한 배상.....	12
	(3) 배상 신청 등록 자격: 최적격자의 배상 신청 등록 방안	14
	(4) 배상제안의 수락.....	14
4.	권고사항 및 맺음말.....	14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 전문가 패널 검토 보고서

1 머리말

전문가 패널은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이다. 본 패널의 역할은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배상 방안(이하 “배상 방안”)을 공평무사하게 감독함으로써 1 차 조사 또는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배상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함에 있다. 본 보고서는 배상 방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본 패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본 패널은 배상 방안의 이행에 있어서 적절히 실행된 부분과 개선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보고서에는 배상 방안에 관한 향후 필요한 조치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본 패널의 권고 의견을 담고 있다.

본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본 패널은 배상지원 사무국에 정보를 요청하여 수령하였고, 배상 방안과 관련하여 공표된 경과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 이행 지표들을 분석하였으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제공한 의견들을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전달 받아 고려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실관계 및 정보는 기본적으로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2 주요 진행경과

아래 도표는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과와 배상 방안의 마련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었음을 여전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이후 신속하게 행동함으로써 배상 방안이 시행된 때로부터 본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약 10 개월 동안 1 차 조사 또는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이 거의 모두 배상 신청을 하였고, 그 중 상당수가 배상 방안에 의해 배상을 받았다는 점 역시 언급하고자 한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아직 배상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배상 대상 피해자들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3 배상 방안에 대한 검토

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의 소통

옥시레킷벤키저는 가슴기 살균제 제조업체 중 최초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배상안을 마련하고 시행한 업체이다. 본 패널은 배상 방안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소규모 및 1 대 1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80% 이상의 배상 대상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배상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달받았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의견을 배상 방안에 반영하였는지를 설명하는 수렴의견 개요 전문은 배상 방안의 시행과 동시에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¹에 공개되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요청 및 요구사항을 존중하기 위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배상 방안에 반영된 피해자들의 의견들 중 하나가 바로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이다. 배상지원 사무국에 따르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한 가족 내에 1 차 조사 또는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가 2 명 이상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해당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그러한 점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심대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배상 방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한 가족 내에 2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가족들이

¹ http://www.oxy.co.kr/hs/download_0729_04.asp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해당 가족에게 5,000 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는 안을 마련하였는바, 본 패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배상 방안에 등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옥시레킷벤키저 임직원들이 포함된 배상 지원 담당자 팀을 배정 받아 배상절차 전 과정에 걸쳐서 그들의 지원을 받았다. 배상 지원 담당자들의 주된 역할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본 패널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배상 지원 담당자들 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검토하였는바, 배상 지원 담당자들의 노력에 관해 긍정적 평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배상 지원 담당자들에 의한 개별적인 소통은 지금까지 배상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상 합의가 체결되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반영된 레킷벤키저 그룹 CEO 의 사과 편지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발송되었다. 그 내용은 옥시 가슴기 살균제 제품이 초래한 상상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에 대한 레킷벤키저 그룹 CEO 의 개인적 사과와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본 패널은 레킷벤키저 그룹이 배상액의 지급으로 그들의 책임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진정하게 인정하는 뜻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레킷벤키저 그룹 CEO 명의로 사과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그러한 뜻을 표명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 방안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²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규정들은 배상 절차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배상 절차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배상규정 및 그 적용에 관한 의문이 있는 피해자거나 그 가족들은 전담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과 콜센터 간의 모든 의사소통 내용은 적절히 문서화되었고, 중요한 질문 혹은 반복되는 질문의 경우에는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위해 배상지원 사무국에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패널은 배상 방안의 전체적인 구조 및 그 시행 과정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과 투명하고도 일관되게 소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한다.

나. 배상규정에 관한 검토

피해자들 및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제안은 아래 도표에 표시된 항목들로 구성되는데, 각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옥시레킷벤키저의 홈페이지에 공표된 배상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상제안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들은 크게 (i)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위자료), (ii)

² http://www.oxy.co.kr/hs/compensation_2_rule.asp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피해로 인해 지출된 과거의 비용(치료비 및 간병비, 장례비, 법률비용 등), (iii) 피해자의 일실수입, (iv) 한국법 상의 배상 원칙 또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자, 가족 내 복수 피해자 배상금 등), 그리고 (v) 상해 피해자들을 위한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같은 5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패널은 배상제안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주요 배상 요소들에 대한 본 패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위자료

배상제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자료이다. 여기에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수년간의 고통뿐 아니라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는 장래의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룹 분류 및 그러한 분류가 배상금에 미치는 영향은 배상규정에 설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그룹은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장애평가기준” 및 배상 등록 전 최근 12 개월 내에 받은 피해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를 기초로 결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옥시레킷벤키저가 폐 이식을 받았거나(폐 이식 이후 피해자의 폐기능이 개선된 경우 포함) 의사로부터 폐 이식을 권유 받은 피해자들을 모두 A 그룹 피해자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그룹 결정에 있어 옥시레킷벤키저의 재량권을 배제함으로써 배상 방안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된다.

그룹 분류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배상 방안 위자료의 기준	
어린이 사망/A 그룹 상해	금 10 억원의 정액 배상금에 포함(여기에는 과거에 지출한 비용, 일실수입 및 이자가 포함되나, 법률비용은 별도로 배상됨)
어른 사망	금 3 억 5 천만원
어른 A 그룹 상해	금 3 억 5 천만원
어린이/어른 B 그룹 상해	금 2 억원
어린이/어른 C 그룹 상해	금 1 억 5 천만원

본 패널은 피해자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옥시레킷벤키저는 당초 각각의 피해자 별로 해당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기초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상당수 피해자들이 가슴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모든 피해자들과 한국 사회 전체가 커다란 고통을 겪은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피해자들 및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배상을 해 줄 것을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는 위와 같은 그룹 분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모든 그룹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전체적으로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피해자들을 보다 세부적인 그룹으로 분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모두 단점이 있다. 전자의 방식은 다양한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심각성이나 그 가족들이 경험한 상실감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후자의 방식은 훨씬 더 많은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배상 제도에서든 특정한 그룹의 상위 경계에 근접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최소한 상위 그룹 중 최하위에 속하는 피해자와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룹을 보다 세분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경계선에 근접한 피해자들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본 패널은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했고, 장시간에 걸쳐 이에 관해 토론하였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올바른 접근법이라든지 완전히 만족스러운 접근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며, 각각의 피해자별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그룹에 대한 배상금의 수준이 장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다른 유사 배상안들 및 과거 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배상금의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의 배상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 공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배상제안을 수락하였다는 사실 역시 배상 방안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본 패널은 추가 정부 조사에서 인정된 혹은 인정될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본 패널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 패널은 상이한 정부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옥시레킷벤키저가 추가 정부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배상의 공정성을 위하여 그룹 분류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상이한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이 상호 간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과거 치료비 및 간병비 배상

과거에 지출된 치료비 및 간병비 역시 배상제안의 또 다른 중요 항목이다. 본 패널은 모든 피해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항목이 명확히 설정된 기준에 따라 배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상해 피해자들에게 중요한데, 과거에 지출된 치료비 및 간병비의 배상 기준은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의 상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상지원 사무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치료비 상환 내역의 각 항목들을 재검토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적용하는 상환 기준이 옥시레킷벤키저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상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고 전달받았다. 배상지원 사무국은 배상 방안 하에서 어떠한 항목이 배상 대상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상제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각각의 항목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본 패널의 이해에 의하면, 이러한 처리로 인해 경우에 따라 배상제안에서 인정되는 과거의 치료비가 일부 감액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 배상지원 사무국이 감액된 액수만큼을 배상제안 상 공제 항목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환액에서 동일하게 감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배상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무국의 조치는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에 적용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본 패널은 일부 피해자들이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였고, 본 패널과도 협의하였다. 본 패널과의 협의 후, 옥시레킷벤키저는 한방 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배상하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배상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패널은 이러한 방침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따른 간병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적절한 간병비를 배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나 신청인이 간병비를 청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i) 피해자들이 가슴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매일 간병비가 지급되었고, (ii) 의료 전문가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간병비가 지급되었으며, (iii) 위 (i) 및 (ii)의 경우 모두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간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병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패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배상안들과 비교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3) 일실수입의 배상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금 산정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i) 최초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수입과 (ii)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다. 이 중 최초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입증의 문제인데, 전문가 패널이 이해하기에 옥시레킷벤키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신고 자료 등의 공적 서류를 기초로 최초 진단일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 혹은 소득신고의 미비 등으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입출금 내역, 각종 소득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피해자들의 수입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상규정은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손해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의학적 기준 재정립 연구”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전신장애율과 직업계수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직업계수는 직업코드와 장애의 종류(본건의 경우에는 ‘호흡기 장애’에 해당)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업을 노동능력상실률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직업코드를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상규정 하에서 직업코드는 직업이 있는 B 그룹 상해피해자들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 한하여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i) 사망피해자의 경우에는 배상규정에 따라 100%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었고, (ii) A 그룹 피해자의 경우에도 (비록 배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옥시레킷벤키저가 상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iii) C 그룹 피해자의 경우에는 (배상규정 하에서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C 그룹 피해자들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0%가 됨에도 불구하고) 옥시 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상해의 잠재적, 장기적 영향을 고려하여 20%의 최소 노동능력상실률을 일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패널은 피해자의 직업이 일실수입 산정에 공정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상지원사무국으로부터 직업이 있는 B 그룹 상해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산정 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였다. 배상지원사무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총 5 명이 있었는데, 전문가 패널은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한 피해자의 직업분류 및 그에 따른 직업코드 확정은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위 5 명의 피해자들 모두 배상제안을 수락하여 배상합의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특히, 피해자 직업의 내용상 복수의 직업코드 적용이 가능했던 사안에서 배상지원 사무국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즉,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는) 직업코드를 선택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사항 외에도, 본 패널은 배상지원 사무국이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i) 고용계약 혹은 관련 법령상 퇴직금 적용 대상인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자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일실 퇴직금을 포함시킨 점, (ii) 배상규정 상 일실수입 계산에 사용되는 퇴직연령이 만 60 세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초진단일 당시 만 60 세에 근접한 피해자의 경우 고용계약 혹은 관련 법령상 특별한 정년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최소 5 년 동안의 일실수입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령을 연장하여 인정하였던 점, (iii) B 그룹 피해자의 경우 해당 피해자가 자영업자로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상해로 인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것 외에) 최초 진단일부터 (1) 의학적 관점에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시점 또는 (2) 퇴직연령에 따른 피해자의 퇴직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 인정한 점을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확인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배상지원 사무국이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배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4) 상해피해자들에 대한 평생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배상 방안을 통하여 옥시레킷벤키저는 1 차 조사 또는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상해 피해자들 중 옥시 레킷벤키저와 배상 합의를 체결한 상해 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옥시레킷벤키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비 및 간병비를 상환하여 주는

제도를 수립하였다. 본 제도는 옥시레킷벤키저의 감독 하에 상환 절차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AAI 헬스케어의 지원을 받아 시행된다. 상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 상환 신청이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상태와 관련된 적격 비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배상 합의를 체결한 상해피해자들에게는 본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책자가 배부되었고, 옥시레킷벤키저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본 제도에 등록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본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 위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잘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본 제도와 연계된 24 시간 전담 콜센터에 문의함으로써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레킷벤키저의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는 상해피해자들의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상환에 있어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다. 향후 위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기업임을 고려할 때, 본 패널은 위 제도의 지속 가능성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본 패널은 이와 같은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나, 이러한 종류의 제도는 모든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옥시 가슴기 살균제 사용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포함)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전문성이 있는 지속 가능한 기구(예컨대 정부 등)에 의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패널은 위 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운영되는지 여부가 신중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위 제도가 보다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가 한국 정부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5) 배상규정의 공정한 적용

배상지원 사무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피해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정성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상 방안이 180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본 패널 역시 피해자들과 동일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제공한 문답서 및 각종 증빙 서류를 검토함에 있어, 배상지원 사무국은 배상규정을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상금을 산정함으로써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배상규정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배상규정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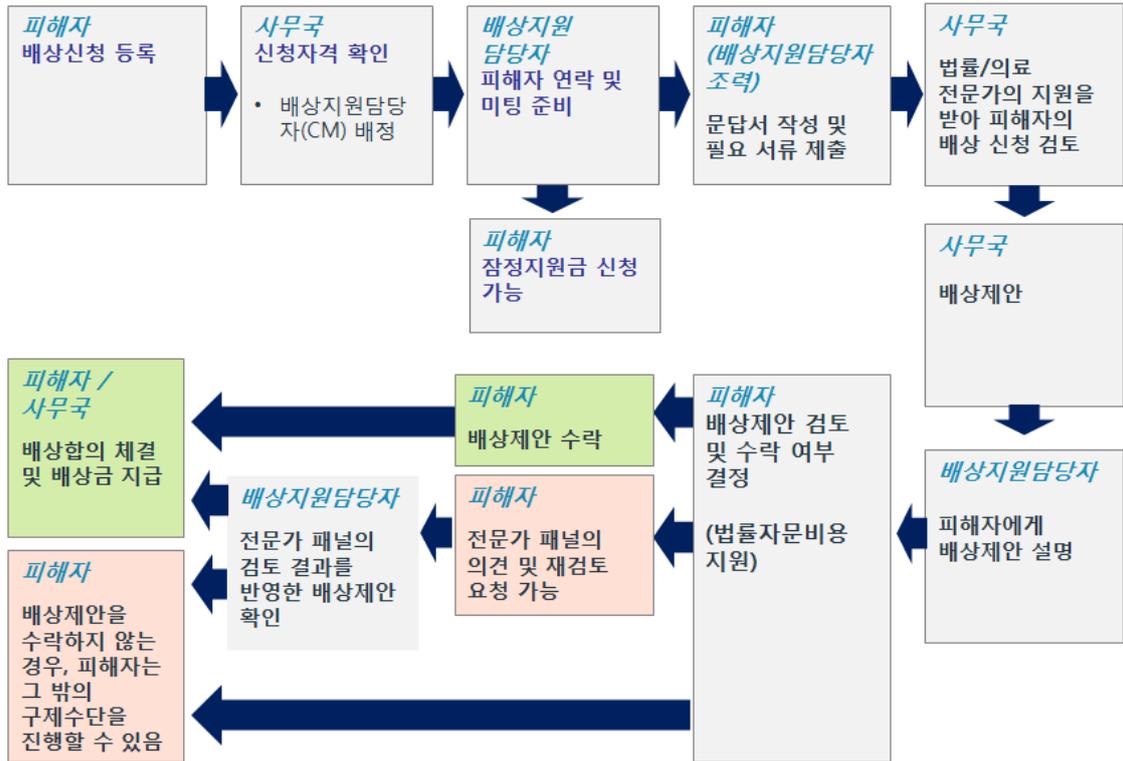
예를 들어, 배상지원 사무국은 본 패널에게 이례적이거나 처리가 쉽지 않은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배상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견해를 구한 바 있다. 본 패널은 배상지원 사무국이 해당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불공정성을 피하기 위하여 배상규정을 개정하는 결정을 내린 예외적인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배상규정에 의하면, 옥시레킷벤키저는 1 차 조사 또는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어린이 피해자 중 심각한 상해(즉, 폐기능 검사 결과 상 배상규정에서 정하는 A 그룹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0 억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액 배상금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가족 위로금, 어린이의 장애의 잠재력에 대한 배상, 적격비용, 일실수입, 이자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어린이가 입은 심각한 상해와 관련된 이례적인 트라우마를 인정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최초로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A 그룹 상해피해자인 어린이의 손해 입증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사망한 어린이 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의 배상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어린이 피해자가 최초진단일 당시 어른이었다면 10 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례가 있었고, 이를 검토한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으며, 배상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한 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즉,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규정을 개정하여 만약 심각한 상해를 입은 어린이 피해자가 최초진단일 당시 어른이었다면 더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해당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본 패널은 그러한 배상규정 개정에 동의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규정이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경우 배상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 배상 방안의 절차에 대한 검토

아래 도표는 피해자의 배상신청 등록부터 배상합의 체결 또는 배상제안 거절까지의 절차를 요약하고 있다.



(1) 배상 방안 진행 현황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합의를 완료하여 배상 방안에 등록하지 아니한 2 명의 피해자 및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1 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배상 대상 피해자들 또는 그 가족들이 배상 방안에 등록하였다. 즉,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배상 방안에 등록한 피해자는 총 180 명으로서, 다른 제조업체와 합의를 완료하여 배상 방안에 등록하지 않은 2 명의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1 차 조사 또는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99%에 대한 배상이 완료되었거나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 시점까지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 방안에 등록한 피해자들 중 82%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 명의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옥시레킷벤키저의 배상제안을 거절하였다.

(2) 신속한 배상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아래와 같다.

각 배상신청 유형별로 등록일로부터 옥시레킷벤키저가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할 때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	
어린이 사망 케이스:	4 - 74 영업일 (평균: 20.86 영업일)
어린이 상해 케이스:	6 - 110 영업일 (평균: 28.96 영업일)
어른 사망 케이스:	10 - 55 영업일 (평균: 24.27 영업일)
어른 상해 케이스:	7 - 58 영업일 (평균: 23.72 영업일)

각 배상신청 유형별로 옥시레킷벤키저가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피해자에게 배상제안이 제시되는 날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	
어린이 사망 케이스:	2 - 65 영업일 (평균: 10.77 영업일)
어린이 상해 케이스:	3 - 64 영업일 (평균: 24.46 영업일)
어른 사망 케이스:	5 - 55 영업일 (평균: 19.59 영업일)
어른 상해 케이스:	3 - 66 영업일 (평균: 26.86 영업일)

특정 사례에서 예외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들이 배상신청시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종종 배상을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서류들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전달받았다.

이와 같은 지연은 피해자들이나 배상지원 사무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검사 결과(즉, 폐기능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한 예약을 신속하게 할 수 없어 증빙서류 준비가 지연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패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권고한다.

첫째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검사에약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옥시레킷벤키저가 폐기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목록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둘째로, 옥시레킷벤키저가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들과 협의하여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검사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율할 것

셋째로, 피해자들이 배상지원 사무국으로 하여금 병원으로부터 그들의 의무기록을 직접 입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스스로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수고를 덜고, 배상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 스스로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옥시레킷벤키저는 어린이 사망 사례의 경우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최소화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에 이미 제출한 의료 영수증 및 의무기록을 배상지원 사무국이 한국환경기술연구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동시에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더 개선할 사항이 없을지 숙고할 것을 권고한다.

(3) 배상 신청 등록 자격: 최적격자의 배상 신청 등록 방안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복수의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배상신청을 등록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배상지원 사무국은 본 패널에게 그러한 경우 해당 가족의 개별적인 상황 및 민법 원칙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가장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복잡하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 방안에 등록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우선순위에 관해 배상규정에 보다 구체적인 원칙을 명시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4) 배상제안의 수락

신청인이 배상 지원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문답서 작성을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출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사례에 배상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피해자에 대한 배상제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현재까지 1 명의 신청인만이 옥시레킷벤키저의 배상제안을 최종적으로 거절하였다. 본 패널은 해당 배상제안이 배상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바, 위 신청인들이 본 패널에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본 패널이 해당 사안을 종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4. 권고사항 및 맺음말

배상 방안과 관련하여, 본 패널은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배상액을 산정하는 공정하고 포괄적인 배상공식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패널은 배상 방안의 배상공식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으며,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배상제안을 수락하고 합의에 이르는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 및 본

배상 방안이 일반적인 다른 배상안들에 비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보아 배상 방안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 본 패널에게 제공된 정보 및 본 패널이 검토하였던 사례들에 기초할 때, 본 패널은 배상지원 사무국이 배상규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배상지원 사무국은 배상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나치게 경직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관성 및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배상규정을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을 취하였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 많은 수의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배상 방안에 따른 배상제안을 수락하였다는 점 및 아직까지 본 패널에 회부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배상 방안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옥시레킷벤키저는 앞으로도 배상 방안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배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한 주요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옥시레킷벤키저가 향후 정부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1 차 조사 및 2 차 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과정에서 취한 방식과 큰 틀에서 동일한 접근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추가적인 정부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이 기존의 피해자들과 비교하여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룹 분류 및 위자료에 관한 현재의 접근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즉, 옥시레킷벤키저가 향후 정부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규정을 마련한다면, 현재의 배상규정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단, 배상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또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소한 변경은 제외).
-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를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환경기술연구원으로부터 상환받은 과거 치료비 등이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에서 상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용과 일관성있게 일치되도록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위 권고 사항에 포함된다.
- 가슴기 살균제 관련 상해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피해자들의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패널은

하나의 사기업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결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의 진행 경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 유사한 이유에서,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가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 및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검사예약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폐 CT 및 폐기능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목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들과 협의하여 가슴기 살균제 관련 폐 손상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검사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한다.
-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스스로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수고를 덜고,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병원으로부터 의무기록을 직접 입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배상절차가 완료된 후 사후관리방안 프로토콜 마련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첫째, 정기적으로 폐기능 검사 및 필요시 영상촬영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의 일관성을 위하여 영상촬영 및 폐기능검사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폐구균성 폐렴 예방접종(1-2 회/평생),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1 회/1 년), 기타 호흡기 질환 유행시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의 합병증이 발견될 때에는 다른 장기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 상해피해자들에 대한 평생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환방식이 아니라 AAI 헬스케어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DB 를 구축함으로써 가슴기살균제로 인한 질병 자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본 패널은 패널 검토보고서를 마무리함에 있어 가슴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폐 손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드리고, 아울러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배상지원

담당자들과 배상지원 사무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1 차 및 2 차 조사에서 1 등급 또는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본 배상 방안을 통하여 다소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셨기를 바라고,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조사에서 피해자로 판정받는 분들에 대한 배상 방안에도 바람직한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문가 패널

2017 년 5 월 31 일

이 성 보 변호사

이 용 진 교수

김 동 수 교수